

●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5-58호
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25일

공정거래위원장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시행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중소벤처기업이 M&A 등을 통해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&A를 통하여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%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이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(참조: 기업집단과, 전화 044-200-4334, 팩스 044-200-4344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입법예고(안)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ftc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단체명이나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(주소 : 339-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)